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2년 8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

1. 보험종목의 명칭

구분	세목	연금지급형태	피보험자 범위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	즉시형	종신연금(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형 [정액형]	개인연금형
		확정연금형[5·10·15·20년형]	개인연금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거치형	종신연금(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형 [정액형]	개인연금형
		확정연금형[5·10·15·20년형]	개인연금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2.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형태 및 보험기간

구분		내용	
연금지급개시나이(Y)		35 ~ 85세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45 ~ 85세)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보증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5년 확정형, 10년 확정형, 15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지급 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

나. 가입나이

세목	가입나이
즉시형	35 ~ 85세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45 ~ 85세)
거치형	20 ~ (Y-1)세

다.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기본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100 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나이-2 세' 연계약해당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 보험료의 총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거치형의 경우 계약자는 전환일 이후 1 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1 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전환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출 후 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 미만인 되지 않아야 한다.

나.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에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의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 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text{내부지표} \times (1 - \alpha) + \text{외부지표} \times \alpha$$

(2) 내부지표

(가) 내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 (주) 1. I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2. E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3. A_{12} : 산출시점 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나)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다) 내부지표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충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3) 외부지표

(가) 외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 = \text{국고채(5년)수익률} \times \beta_1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text{수익률} \times \beta_2 + \text{통화안정증권(1년)수익률} \times \beta_3$$

(주) 국고채 가중치, 회사채 가중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ta_1 : \text{국고채 가중치} = \frac{a}{a + b + c}$$

$$\beta_2 : \text{회사채 가중치} = \frac{b}{a + b + c}$$

$$\beta_3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 \frac{c}{a + b + c}$$

- a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나) 국고채(5년) 및 회사채(무보증 3년, AA-)와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다)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4)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내부지표의 가중치}(1 - \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가.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한다.

나.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다.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영세칙을 따른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나. 상속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에도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계약자는 '가' 및 '나'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기타

가. 특약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요율 및 피보험자의 나이를 적용한다.

(2) 연금전환 조건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을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이 특약은 연금보험상품에 부가할 수 없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생존연금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존연금을 지급한다.

마. 기타사항은 전환전계약을 준용한다.